연구노트

-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박 선 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 · 안전센터장
-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 소개 김 승 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한국의 新성장동력 여성 자원봉사활동 조 선 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선 옂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 · 안전센터장

현재. 국회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정 논의에는 현행 여성 발전기본법이 변화된 여성정책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 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 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09년 현재, 총 11차례 개 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차례의 걸친 개정 중 정부조직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개정을 제외 한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은 3차례(2002, 12, 11, 제5차 개정, 2005, 12, 29, 제8차 개정, 2008, 6, 13, 제11 차 개정) 있었다. 3차례에 걸친 개정도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조직 변경이나 권한 배분 조정이나 정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보완이었지 제정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현재.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을 둘러싼 환경과 여성 정책의 방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개정 필요성

1) 성별개발지수와 성별격차 사이의 간극 축소

2007~2008년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득률, 교육수준, 1인당 GNP

1)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을 정한 제3장의 규정들에는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이나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 등 일부 내용이 참가되고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조항이 정비된 것과 비교적 새로 운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된 것 외에 특별히 추가된 정책 목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 조정기구에 관한 규 정이나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기구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에 관한 것 등이 많았는데, 근거 법령을 달리하거나 법률에 근거 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한 것으로 볼 부분이 더 많다. 박선영·박복순·김진·김정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 가」, 국회여성위원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년) 참조.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등으로 산정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의 경우 한국은 177개국 중 26위이다. 그 리고 남녀 간의 평균수명, 남녀 간 문자해득률, 남녀 간 교육수준 및 예상소득수준으로 산정된 성별개발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GDI) 는 140개국 중 26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의 비율, 여성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여성 전문 기술노동자 비율, 남녀 간의 예상소득비율로 산정된 성별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93개국 중 64위에 그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HDI 상위 50개국 중 성별개발지수(GDI)와 성별권한지수(GEM) 간의 격차가 일본 다음으로 큰 국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어 왔지만 그에 걸맞은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경제참여와 기 회. 교육성취도, 생존과 건강, 정치권한부여 등을 통해 남녀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남녀격차지 수(Gender Gap Index ; GGI)에서 한국은 115개국 중 97위로 아프리카의 튀니지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경제참여와 기회에서는 128개국 중 90위를 교육성취도는 94위, 건강과 생존은 106위, 정치권한부여는 95 위로 여성의 경제참여와 정치적 권한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처럼 한국 여성은 성별개발지수는 높 은 반면, 성별권한지수와 성별 격차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얼 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정책이 '여성발전' 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개발지수와 성별권한지수, 성별격차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차별이 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을 전제하지 않고. 여성의 지위 향상 등과 같은 여성발전만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성발전' 보다는 성차별 구조의 해소 즉. 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촉진 정책으로 여성정책의 중심이 변화 될 필요가 있다.

2) 성주류화 전략의 체계적인 추진

성주류화 전략이란 실질적 평등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뿐 아니라. 불평 등을 야기하는 남성편중 구조와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넘어서서 '여성이 사회전체의 모 든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의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주류화를 위한 '3대 수단'이라고 불리우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는 각기 법제 화되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들 3대 수단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 통계법

2)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고, 성별임금격차도 축소되었고, 여성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 고시 등의 여성합격률은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정도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2%의 증가에 머물고 있고,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 곡선을 여전히 그리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비정규직화 헌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에 의 한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큰 차이로 존재하고, 여성의 비공식부문 고용이 남성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별임금격차는 축소되었지만, OECD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나, 여성근로자 중 약 38%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이다. 세계화, 정보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부 여성들이 약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 차별적 구조의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와 2009년 현재 여성을 둘러싼 변화된 현실과 변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박선영· 박복순·김진·김정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년) 참조,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달라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통일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여성정책의 기본법 안에 성주류화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성주류화 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강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상 각 부처 간의 여성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 가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 부처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1년에 1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로는 성평등정책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약해진 현재에서는 조정안건을 내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주류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조정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2. 개정 방향

이상의 개정 필요성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 로 정책의 목표가 변화되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성주류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차별 구조의 해소를 위해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성평 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성주류화 조치 실시와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간의 연계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다 섯째,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권익 보호, 시민사회와의 협력 지원 등을 명 문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본법으로서의 법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본법에 맞지 않는 조 항은 삭제하여 독립입법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률에 편재하게 해야 하고 (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 인력개발센터 관련 규정). 여성관련법률의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시책을 근거로 독립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 성희롱,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등).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 소개

김 승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개요

1) 개요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뿐만 아니 라 종단면적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2007년도에 실시된 제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시작으로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다양한 연구자에게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여성가족패널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음.
- 2009년 8월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였음.
 -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주소 : http://klowf.kwdi.re.kr/

2) 주요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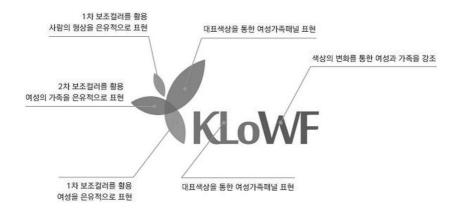
- 여성가족패널조사 소개
 - 2006년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의 연도별 상세한 소개 및 홍보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표본설계, 조사내용, 가중치 관련 내용 수록
-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탑재 및 연도별 업로드 기능구축

연구노트



- 2007년도 제 1차 자료(설문지, 데이터, 유저가이드, 코드북 등)탑재
- 매년 자료 업로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 여성가족패널 자료 사용 연구자 관리
 -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연구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통하여 간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함
-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매년 개최되는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소개
 - 신청서 접수
 - 발표 원고 제출
- 발표 논문 탑재
- 관련 논문, 기사 등의 탑재
 -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 원고, 보도 기사 등에 대한 원문탑재 시스템 구축

3)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로고 소개



2. 여성가족패널 조사 결과

1) 1차년도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여성기족패널조사 홈페이지 소개

• 총 응답 가구수 : 9,068가구 • 총 여성응답자 수 : 9,997명

• 자료 공개: 2009년 7월 16일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였음.

⟨표 1⟩ 2007년 제 1차년도 여성가족패널 조사결과

	조 사 구	가 구	여 성 응 답 자
목표표본	1,700	8,500	10,000
성공표본	1,771	9,068	9,997
목표대비	104.2%	106.7%	99.97%

2) 2차년도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5월

- 2008년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원표본 조사대상 9.068가구 중 총 7.714가구를 조사하여 원표본 성공 율은 85.1%임.
- 2008년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년도 성공가구원 9,997명 중 총 8,368명을 조사하여 원표본 성공 율은 83.7%임.
- 분가가구 포함한 총 조사성공 가구수는 7,754가구, 신규가구원을 포함한 총 조사성공 가구원수는 8.672명임.
- 총 조사 표본수 : 총 7.754가구(여성개인 8.672명)
- 자료 공개 : 2009년 8월 현재 자료를 클리닝 중에 있으며 2009년 공개예정임.

⟨표 2⟩ 2008년 제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 가구조사결과

	원 가 구	분 가 가 구	합 계
전체조사 대상가구	9,068*	82	9,150
조사가구	7,714	40	7,754
 완료 %	85.1%	49.0%	84.7 %

^{*} 패널탈퇴요구, 사망, 해외 자녀교육, 이민,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를 포함함.

^{*} 데이터 클리닝 후 분가 처리 등의 사유로 집계부수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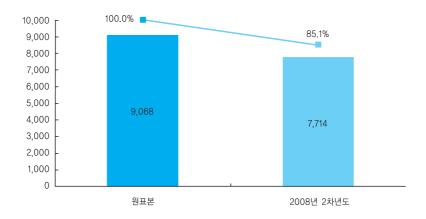
⟨표 3⟩ 2008년 제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 개인조사결과

	1차년도 성공가구원	신규가구원	합 계
전체조사 대상가구원	9,997	1,024**	11,021
조사가구원	8,368	304	8,672
 완료 %	83.7%	29.7%	78.7%

^{* 1}차년도에 추출된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대상이었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했던 444명과 조사대상가구에 새롭게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580명을 신규조사 대상으로 포함함.

3) 패널유지율 결과 (원가구 기준)

-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구축된 원가구 9,068가구 중 7,714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85.1%임.
- 원가구 9,068가구에서 82가구의 분가가구가 발생했으며, 그 중 40가구에 대해 조사 성공하여 분가가구 를 포함하여 총 7,754가구의 조사를 진행함.





한국의 新성장동력 : 여성 자원봉사활동"

조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부 문화의 발전과 성숙이라 는 하나의 목표가 우리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숫자가 작지 않다. (사)볼런티어21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 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이다. 즉, 인구의 20%가 자원봉사 참가자인 셈이다(볼런티어21 외. 2008).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 우수 여성의 증가 및 기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 해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남녀별 자원봉사 참여 실태(2004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이라고 하고 있다(김태홍 외, 2005). 최근 젊은 여성 들 사이에서는 높은 감성지수와 능동적인 자세를 여성들의 강점으로 인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축제로 여 기고 있으며(여성신문, 2009), 2008년 한국인(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세계자원봉사협의 회(IAVE) 회장으로 뽑혔다.² 또한 200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당시 한국자원봉사활 동의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19조에 따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 사센터가 설치 · 완료 되어 정부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워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현실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의 조사와 연구들은 양과 질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다소의 미흡함과 미진함을 가졌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민간ㆍ지역단위 자워봉사 패 러다임으로의 전화 등으로 자워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 자워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원 봉사 활동이 전 세계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와 막대 한 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여성 자워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증가 및 중요성과 함께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

^{1)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연구위원, 이선행 전문연구원,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 야의 여성 자원봉사활동가들,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협력 및 자문을 하고 있다.

²⁾ IAVE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1천 여개 개인과 단체 회원이 가입한 단체로 설립 40년 이래 아시아권에서 대표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에 따르면, 한국은 빠르게 성 장하고 있는 자원봉사 신흥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련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집행.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특징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volun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원봉 사활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과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 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자원봉사활동으로 범위를 한정하 되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이 자원활동가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하는 무보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사)볼런티 어21의 1999, 2002, 2005, 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현황」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등을 그룹핑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먼저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자들은 30대(22,2%), 40대(22,6%),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업주부(45.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여성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참여율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15,3%, 2002년 17,2%, 2005년 23,4%, 2008년 19.9%로 지난 7여 년간 증가하다가 2008년 약간 감소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실제 심층면접의 참가 자들은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참가자들은 한국 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30~50대의 기혼여성들의 활동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 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면접이 사회현상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여성들은 각종 봉사단체와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 등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여성들은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살펴보면. 이타주의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국의 新성장동력: 여성 지원봉사활동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 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직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중요한 동 기로 지적되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와 더불어. '돌봄'에 대한 여성 특유의 경험과 익숙함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었다.

3)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저해요인

반면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인정의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인정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여 성 자원봉사활동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심층면 접 참가자들이 지적하고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인정과 지지 못지않게 기관이나 단체, 혹은 사회에서의 인정 과 지지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왜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해야하는가?

상기 여성자원봉사의 현황과 특성에서 알 수 있었듯이 실제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원 체계가 미진한 것이며, 지원체계 등을 논하기 위해서 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유엔은 2001년도에 회원국들 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그 공헌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유엔 총회, 2001), 유엔 통계국은 국가 회계시스템 내 국가가 생산한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부가 회계에 자원 봉사 활동의 가치를 포함시키도록 추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논의는 다음의 5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ILO).3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광범한 영역이며 상당한 경제 가치를 발생시킨다. 둘째, 많은 국제기구들이 자원봉 사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노동력 통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넷째, 자원봉사가 자원 봉사자 본인과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많은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 사활동의 범위나, 규모, 분배에 대한 측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정책 형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유용한 목적들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이 많은 비공식 노동 시장의 중요

3) ILO(2009)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한 구성의 규모를 문서화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노동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제 노동력 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자원 봉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제 효과 또한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그렇다면,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한 가치는 얼마일까?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준들과 방법에는 주기적인 조사와 방법에 있어 비교가능성, 실 행 가능성, 비용 유효성, 효율성,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여성자워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를 측정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다. 볼런티어21 외(2008)에 따르면 한국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7조 3,896억 원이라고 하였으며, 김태홍 외(2005)에 따르면, 광의의 경제적 가치는 8조 2,247억원, 협의의 경제적 가치는 1조 5,194억 원이라고 계산하였다. 실제 해당년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약 0.82%에서 0.2%임을 알 수 있다. 각 국의 자워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살펴보면 미국(5.8%), 영국(5.7%)과 비교할 때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 를 보완하고. 계량경제학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新성장동력의 하나

이처럼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속가능 성장시대를 함께 하기위해 지 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노인지역봉사기관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관할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자원 봉사센터, 청소년진흥센터, 노인지역봉사기관을 담당하며, 여성부는 여성자원활동센터를 관할한다. 또한 관 련 근거법령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노인복지 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으로 다양하다. 관련 인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주요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여성 자원봉사활동이 전통적인 돌봄노동에 치중된 주부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며, 남성 자원봉사활동이 기업 자 원봉사활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았지만 신성장동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제 역할을 하려면 자원봉 사활동 전반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적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 나 지역의 기관, 단체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선발, 교육, 훈련,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